

# 한국모태펀드

## 2019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885억원 내외 (문화 1,080억원, 특허 325억원, 교육 150억원, 환경 130억원, 해양 200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으로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19년 2월 27일(수), 14:00 / (교육계정) 3월 6일(수), 14:00 · 2019년 4월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잔여 출자예산 및 사업 추진 일정 에 따라 매달 사업을 변경 공고할 수 있음, 단 선정(심의) 시기는 익월 출자사업 일정으로 연기할 수 있음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교육계정		·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회(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 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단, 교육계정 대학창업 분야는 별도 공고되는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 계정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 계정은 개인투자조합 형태만 신청할 수 있음.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문화	공연		210	300	70%	○
	게임		150	300	50%	○
	청년콘텐츠		250	450	56%	○
	지역콘텐츠		150	250	60%	○
	콘텐츠 민간제안		250	500	50%	○
	출판		70	100	70%	○
	소계		<b>1,080</b>	<b>1,900</b>		
특허	IP기반 스타트업육성		75	120	62.5%	○
	IP 창출·보호		250	500	50%	○
	소계		<b>325</b>	<b>620</b>		
교육	대학 창업	1유형 <sup>주1)</sup>	75 <sup>주3)</sup>	100	75%	○
		2유형 <sup>주2)</sup>	75 <sup>주3)</sup>	100		
환경	미래환경산업		130	217	60%	○
해양	해양신산업		200	286	70%	○
합 계			<b>1,885 내외</b>	<b>3,223 내외</b>		

주1) 2018년도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 대상, 적격 자펀드 부족 시 2유형으로 선정 가능

주2) 2018년도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 대상, 적격 자펀드 부족 시 1유형으로 선정 가능

주3) 한국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은 최소 7.5억원, 최대 37.5억원이며 자조합 최소결성규모는 10억원임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문화 주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약정총액의 30% 이상은 창작공연예술*에 투자</li> <li>*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국내 단체 또는 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li> <li>* 영화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li> </ul>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관련 프로젝트 및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ul>
	청년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콘텐츠*기업에 지분형태(우선주,보통주,CB,BW 등)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청년콘텐츠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li> <li>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li> </ul>
	지역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콘텐츠 기업* 및 지역콘텐츠**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지역 콘텐츠 기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콘텐츠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단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li>** 지역 콘텐츠 : 지역 콘텐츠 기업이 제작하는 콘텐츠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제작된 프로젝트, 동 지역에 전시·공연된 프로젝트를 의미.</li> <li>- 단, 지역콘텐츠 관련, 순제작비(홍보, 마케팅비 제외)의 50% 이상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외부 회계사가 검증 필수(회계사 관련 비용은 펀드가 부담)</li> </ul>
	콘텐츠 민간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정이 기존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하여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영화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li> </ul>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출판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 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함</li> <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름</li> </ul>
특허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단 IP기반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하고, IP엑셀러레이터(은행권 청년창업재단 포함)***가 보육 중인 기업에 30억원 이상 투자. 그리고 IP엑셀러레이터가 보육 중인 기업에 투자할 때 IP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구주를 지분 관계 정리 등의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li> </ul>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p> <p>** 5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보유한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p> <p>*** ①변리사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②5개 이상의 IP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한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p>
	IP 창출·보호	<p>○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단,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장·분쟁대응**에 사용될 것</p> <p>*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p> <p>** 출원·등록료, 대리비용, 특허 매입·라이선스 비용, 특허전략·보호 컨설팅 등</p>
환경	미래환경산업	<p>○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p> <p>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 포함 (약정총액 20%이내)</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p>
해양	해양신산업	<p>○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18.7)'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대상 해양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p> <p>*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개발, 해양레저, 친환경 선박·기자재, 첨단해양장비, 스마트 해상물류 등</p> <p>** AI, IT,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p> <p>***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3호의 해양수산업(다만, 동법 제3조3호 가목 등 수산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하며, 조선산업은 포함한다.)</p>
교육	대학창업	<p>○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75% 이상 투자 단,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총액의 50% 이상 투자</p> <p>* 대학창업기업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p>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①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 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창업 후 6개월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이하 “창업자”) ② 최초 투자 당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대학창업기업 중 ① 유형 기업. 단, 해당 임원이 대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제외  ※ 단, 액셀러레이터 겸영 기술지주회사(Co-GP 포함)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5)

주)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의무 비율

- 약정총액의 30% 이내에서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 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 출자자 관련 투자집중 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 4. 기타 사항

\* 교육계정의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형태의 운용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액셀러레이터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동운영(Co-GP)인 경우만 가능

유형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법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단, 과학기술원 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액셀러레이터(겸영, Co-GP 포함)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 가능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단, 교육계정 대학창업 분야의 경우 [별첨]을 적용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문화	특허	환경	해양
창업초기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한정)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출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	○	○	○
문화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출자참여 규모에 따라 차등 우대)	○*	○		
본점 또는 지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지원)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제안사가 IP수익화·유동화, IP Sale & Licenses Back 분야에 투자실적이 있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제안사가 해양신산업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 문화계정 분야 중 '지역콘텐츠'분야 에 한정하여 선정 우대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

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 단, 중진계정의 민간제안분야 내 「KVF결성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상기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업무정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하다.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table border="1" data-bbox="352 383 427 472"> <tr> <td data-bbox="352 383 427 472">교육 계정</td> </tr> </table>	교육 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b>1% 이상</b></li> <li>○ 조합 약정총액의 <b>15% 이상</b>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운용사 관련 기관 출자금 합산, 단, GP는 약정총액의 <b>5% 이상</b> 출자)</li> </ul>															
교육 계정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li> <li>○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운용사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li> </ul> </li> <li>- &lt;환경·해양계정&gt;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조건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48 808 1401 1160"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lt;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gt;</th> </tr>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3" style="width: 85%;">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li> </ul> </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li> <li>- &lt;특허계정&gt; 민간 출자자를 대상으로 상기 ①~③ 조건 중 운용사가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 하며,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li> <li>- &lt;교육계정&gt; 모든 민간출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을 적용하되,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운용사가 제안하고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table border="1" data-bbox="480 1599 1374 1682" style="margin: 10px auto;"> <tr> <td style="padding: 5px;">               1)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배분을 받지 않음                2) 우선손실충당 10% 이내 및 우선수익배분 기준수익률 IRR 7% 적용             </td> </tr> </table> </li> <li>-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하며,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li> </ul>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1)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배분을 받지 않음 2) 우선손실충당 10% 이내 및 우선수익배분 기준수익률 IRR 7% 적용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1)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배분을 받지 않음 2) 우선손실충당 10% 이내 및 우선수익배분 기준수익률 IRR 7% 적용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li> <li>○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상 투자 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li> </ul>
<p>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li> <li>*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li> </ul>
<p>출자금 납입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p>교육 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납(capital call)으로 한정</li> </ul>
<p>자조합 존속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특허 계정)</b>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li> <li>○ <b>(교육 계정)</b> 존속기간 최대 10년 이내, 투자기간 최대 4년 이내 운용사 자율제안</li> <li>○ <b>(환경 계정)</b>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4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li> <li>○ <b>(해양 계정)</b> 존속기간 8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li> <li>* 단 계정별로 기준규약(신규약)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li> </ul>
<p>관리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특허계정 신청 운용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대상)</b> 특허·문화계정</li> </ul> </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li> </ul>
<p>기준수익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계정(IP기반 스타트업 육성), 교육계정 : 0% 이상</li> <li>○ 문화·해양계정 : 2% 이상</li> <li>○ 특허계정(IP 창출·보호)·환경계정 : 3% 이상</li>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단 모태펀드 쿨오프션을 부여할 경우 미적용</li> </ul>

항 목	내 용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단, 교육계정은 수익의 25%이내, 문화계정은 수익의 30% 이내</li> <li>○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b>(적용대상)</b> 특허·문화계정</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sup>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li> </ul>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t;환경계정&gt;</b>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li>○ <b>&lt;문화·환경·해양계정&gt;</b>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li>○ <b>&lt;해양계정&gt;</b>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 60%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li>○ <b>&lt;교육계정&gt;</b> 조합의 전체 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ul> <p>※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모태펀드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유한 책임조합원에게 콜옵션 부여 가능.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조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li> <li>* 적용대상 및 기준</li> </ul> <table border="1" data-bbox="443 1574 1417 168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콜옵션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교육계정)</b> 대학창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출자지분 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가격 :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기간 :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li> <li>* 유한책임조합원 매수권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li> <li>*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li> </ul>	분야	콜옵션 한도	<b>(교육계정)</b> 대학창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분야	콜옵션 한도				
<b>(교육계정)</b> 대학창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항 목	내 용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li> </ul>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기구 (교육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집행조합원 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 <table border="1" data-bbox="459 707 1401 136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외부전문가</th> </tr> </thead> <tbody> <tr><td style="width: 20px;">1</td><td>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td></tr> <tr><td>2</td><td>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td></tr> <tr><td>3</td><td>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td></tr> <tr><td>4</td><td>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td></tr> <tr><td>5</td><td>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td></tr> <tr><td>6</td><td>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td></tr> <tr><td>7</td><td>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td></tr> <tr><td>8</td><td>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td></tr> <tr><td>9</td><td>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td></tr> <tr><td>10</td><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td></tr> <tr><td>11</td><td>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td></tr> <tr><td>12</td><td>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td></tr> <tr><td>13</td><td>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td></tr> </tbody> </table> </li> <li>○ 조합 별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 가능</li> <li>○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li> <li>○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참관인 또는 의결권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li> <li>○ 한국모태펀드(특별조합원)는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관인으로 참석 가능</li> <li>○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직원은 외부전문가로 참석이 불가하며, 투자의사결정기구가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타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증빙(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li> </ul>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li> <li>○ 문화계정 프로젝트 투자시 다음 사항 적용</li> </ul>																												



항 목	내 용
	<p>1. 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li> <li>-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li> <li>-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li> <li>-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li> <li>-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li> <li>-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li> </ul> <p>2. 준수 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의무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li> <li>-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li> <li>-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li> <li>·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li> <li>·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li> <li>*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 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li> </ul> </li> <li>-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li> </ul> <p>○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개인투자조합은 제외)</p> <p>○ (교육계정) 다음 사항 적용</p> <p>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p> <p>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p> <p>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p> <p>*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p> <p>**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p> <p>②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p> <p>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단, 외부 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p> <p>④ 후행투자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가결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p> <p>⑤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함</p> <p>○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p>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9. 2. 27.(수)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9. 3. 6.(수) (교육계정)		
'19.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9. 7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교육계정은 2개월 이내)

####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9. 2. 27.(수) 14:00 / (교육계정) 3. 6.(수)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9. 2. 27.(수) 10:00 / (교육계정) 3. 6.(수)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2. 11.(월) 14:30 / (교육계정) 2019. 2. 11.(월) 16: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교육계정 적용)
  -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후 조합 결성 이전에 입사를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단,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조합 결성 후, 1년 이내에 대표펀드매니저(운용인력 포함)가 이직 등 변경 시 조기해산의 사유가 되며, 1년 초과 시 대표펀드매니저(운용인력 포함)의 변경은 내부 기준 규약 등에 따라 관리보수를 삭감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교육계정 : 엔젤투자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문화 계정 : 02-2156-2096, fof@k-vic.co.kr
  - 나. 특허 계정 : 02-2156-2060, fof@k-vic.co.kr
  - 다. 환경 계정 : 02-2156-2189, fof@k-vic.co.kr
  - 라. 해양 계정 : 02-2156-2167, fof@k-vic.co.kr
  - 마. 교육 계정 : 02-2156-2030, angelfof@k-vic.co.kr
  - 바.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1. 31.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율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 신설 및 소형(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 원 미만인 운용사) 창투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

#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 [교육계정 대학창업 분야]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 및 창업 교육/지원 관련 실적 등
	재무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투자실적/성과	비상장(창업자, 벤처기업) 신주 투자, 투자 회수(exit) 성과, 후속투자 유치 실적
	준법성	최근 1년간 부정비리대학 해당 여부 및 엔젤투자매칭펀드 계약 위반, 소송, 민원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투자, 창업, 산업계 경력 등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핵심인력의 팀웍, 근속기간,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여부
가점 등	공고문 [별첨]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40점, 조합운용능력 6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별첨]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교육계정 대학창업 분야)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순번	가점 항목
1	결성 목표액 초과 출자자 모집 제안한 경우 (미충족시 선정 취소사유 해당)
2	주목적(학생창업기업) 투자비율 증대방안 제시 (규약 반영)
3	지방소재(서울·인천·경기 외) 기업 투자비율 제시 (규약 반영)
4	후속 투자 관련 VC 등과 MOU 체결
5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창업지원, 엔젤투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급 이상의 표창 등 제시
6	자체 보육시설(Business Incubator)을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7	창투사 등 VC와 공동투자 제시 (규약 반영)
8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영(Co-GP) 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LP)로 참여 (미충족시 선정 취소사유 해당)
9	운영 전담인력 2인 이상 보유
10	주목적 투자 조기 집행 계획 제시 (규약 반영)

※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3), 7), 10) 항목은 규약에 반영하며, 1), 8) 항목 충족에 실패할 경우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출자자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대주주, 출자자 등의 확인서(독립적 의사결정 보장 관련)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포함)

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투자 경력(민간, 대학 등에서 현금·현물 투자 경력 포괄적으로 인정) 1년 이상인 전담인력이 1인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운용사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 아.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기타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 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달성 기준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단,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기타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기타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최초 상실일 기준

##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형사상 피소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형사상 피·기소된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대표펀드매니저가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사. 결성목표액 초과 출자자 모집 제안 관련 가점을 받고 최종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점 획득을 위해 제시한 출자자 모집 요건 달성에 실패한 경우
  - 아.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영(Co-GP) 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LP)로 참여 관련 가점을 받고 최종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점 획득을 위해 제시한 공동운영 또는 출자자 모집 요건에 실패한 경우
  - 자.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나.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로 도래 하는 출자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조합 출자 제한